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89-576호('89.07.01)

관세청 고시 제89-588호('89.08.08)

관세청 고시 제98-64호('98.10.30)

관세청 고시 제00-39호('00.11.23)

관세청 고시 제01-01호('01.01.12)

관세청 고시 제03-40호('03.12.02)

관세청 고시 제08-11호('08.3.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관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 면세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수출조건 면세대상 기관 또는 시설)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개정 2003.12.2.>
2. 국방과학 연구소

제3조(포장용품의 범위) ①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 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제4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건품의 범위)

①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2.>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이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주문,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을 말한다.
2.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을 말하며,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당해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2.>
3. "제작용 견품"이란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또는 제작용 견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 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에 의하여 판단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용도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제5조(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물품)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대상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0.>

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2. 과일(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5. 환형 동물류(산것에 한한다)
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에 한한다)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운송차량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제6조(재수출시기 및 담보금 해제시기) 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금은 당해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의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멸실) ①법 제97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에서 멸실이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②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멸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0-39호, 2000.11.23.>

이 고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1-1호, 2001.1.12.>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3-40호, 2003.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8-11호, 2008.3.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